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92

발의연월일: 2021. 3. 22.

발 의 자:김민철・김경협・김철민

김홍걸 • 민형배 • 민홍철

서영교 • 어기구 • 오영환

이용호 · 임오경 · 장철민

한병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,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, 농업인의 예금·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올해 2021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극심한 저출산·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.

또한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영세

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,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·예금·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 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).

### 주요내용

- 가. 농·어민 지원을 위해 농·어업경영 및 농·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(안 제106조제1항).
- 나. 농・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・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2호, 제3호"를 "제2호"로, "적용하며"를 "적용하며, 제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3호 중 "제11호 및"을 "제11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,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 2, 제5호, 제9호의 2, 제9	
호의 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	
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	
에만 적용하고, <u>제2호, 제3호</u> ,	<u>제2호</u>
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21년	
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	
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 2	적용하며, 제3호는 2025년 12월
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	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
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	하고
고, 제8호의 3은 2015년 1월 1	
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	
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	
용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	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	②

인지세	면제	기일에	관하여는
다음 각	호에	따른다.	

- 1. ~ 2. (생 략)
- 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
 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
  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
  문서에만 적용
- 4. ~ 5. (생 략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
제11호는 2025년 12월 31일까
<u>ਸ਼ੑ,</u>

4. ~ 5. (현행과 같음)